
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	규정 번호	4-1-4
		제정 일자	1995.03.01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입학전형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보직교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<2023. 6. 21. 개정>

제3조(심의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
3. 입학전형의 사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입학 전형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1인을 간사로 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